



제 433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원 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21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01. 08.
3. 회부연월일 : 2026. 01.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Ⅲ.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원 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을</u>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 ----- ----- --- <u>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 ----- -----. ② 시·도지사는 <u>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u> ③ ----- <u>제1항 및 제2항에</u> ----- ----- <u>및 치료비 지급을</u> ----- --.
② 시·도지사는 <u>제1항에</u> 따른 보상금 <u>지급을</u>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제13조).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¹⁾>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²⁾	
○ 임무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각종 행사장 안전지원 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및 역할	
구분	역할
일반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전문의를용소방대 ³⁾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의용소방대 ⁴⁾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2024.12.31. 기준):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 2024년도 교육훈련 현황: 총 126,244회 / 477,038명 교육

(자료: 소방청)

1)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1] 참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4)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범위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제17조).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제도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입는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대원의 생명·신체 보호와 활동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소방청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현장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으로 활동 중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가 확보되어야 지속적인 참여 및 조직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설명함.

현행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1)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을 지급받고(요양보상),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후 완치된 이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며(장애보상), 3)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보상과 유족보상을 받는데(장례보상, 유족보상),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재해보상 내용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보상인 공무원 재해보상의 내용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보임5).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의 종류>

종류	재해보상 요건 및 내역	비고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6)
요양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장애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름	장해급여
장례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재해유족급여

5)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제도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6)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요양의 청구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제26조(재활운동비) ① 재활운동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
2.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으로서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제34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장애를 입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7).

- 제43조(사망조위금)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7) 해양구조대원도 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을 받고 있음. 다만,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해서는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재해보상에 관해서는 동법의 전신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상의 범위에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가 포함됨을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음.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해양구조대원 재해보상 관련 법문 연혁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11호, 2024.1.2. 제정, 2025.1.3. 시행)
「수난구조법」 [법률 제11379호(2012.2.22.전부개정, 2012.8.23. 시행)부터 제12844호(2014.11.19. 2014.11.19. 개정 및 시행)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④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의 <u>치료 및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제정 및 시행)부터 법률 제1991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⑦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해양재난구조대 제도 개요는 [참고 3] 참조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제도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요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u> 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 포함)</u> 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개정안은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도 재해보상 요건에 명시
보상의 범위 및 종류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 <u>치료비</u>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그 밖의 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재해보상의 종류 중 치료비는 법률에 규정, 그 밖의 보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먼저, 현행 법령은 법률에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법 제17조), 요양보상, 장애보상 등 구체적인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8])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원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여짐.

특히, 부상은 사고 및 외력 등으로 신체가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고, 장애는 부상 또는 질병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 또는 장기적 기능 저하가 남은 결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요양보상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중 요양보상·장애보상 요건 및 보상금 지급기준>

종류	재해보상 요건 및 내역	보상금 지급기준																		
요양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u>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u>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u>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u>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애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u>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u> 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름	<table><tr><td>제1급</td><td>유족보상금의 100/100</td></tr><tr><td>제2급</td><td>유족보상금의 88/100</td></tr><tr><td>제3급</td><td>유족보상금의 76/100</td></tr><tr><td>제4급</td><td>유족보상금의 64/100</td></tr><tr><td>제5급</td><td>유족보상금의 52/100</td></tr><tr><td>제6급</td><td>유족보상금의 40/100</td></tr><tr><td>제7급</td><td>유족보상금의 20/100</td></tr><tr><td>제8급</td><td>유족보상금의 10/100</td></tr><tr><td>제9급</td><td>유족보상금의 5/100</td></tr></table>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현황(2021년 이후)>

(단위: 명, 천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0	309,059	14	17,760	21	35,858	10	37,383	24	27,611
요양보상	8	20,009	13	16,231	21	35,858	10	37,383	24	27,611
장애보상			1	1,529						
장제보상	1	7,050								
유족보상	1	282,000								

(자료: 소방청)

다음으로, 개정안은 재해보상의 종류 중 치료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여러 종류의 재해 보상 중 치료비에 대해서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법률에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명시하고 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의용소방대 재해보상 범위에 대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여 의용소방대 대원의 재해활동에 대한 보호와 조직 유인책 마련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 1 의용소방대 개요

(자료: 소방청)

■ 의용소방대 정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
-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년 : 65세

■ 소집수당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지원 등 “의용소방대법”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
- ② 그 밖의 교육·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의용소방대 조직

- 조직구성 :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

구 분		역 할
일반 의용 소방대	남성 의용소방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전담의용소방대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2024.12.3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전문·전담
대수(대)	3,979	1,419	1,306	172	1,082
현원(명)	92,484	35,571	30,742	4,281	21,890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구 분	총 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70,137	6,447	1,386	5,712	88,902	34,815	41,872	91,003
인원 (명)	1,286,330	33,539	8,495	27,050	446,142	145,443	198,567	427,094

○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현황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24년	횟수(회)	126,244	20,973	2,026	384	383	4	659	2,338	99,364	113
	인원(명)	477,037	326,840	58,504	4,482	1,459	9	4,232	50,429	30,965.5	117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23년	횟수(회)	103,178	18,986	2,079	186	367	15	721	1,096	79,686	42
	인원(명)	426,460	303,143	51,326	2,409	1,522	57	2,223	27,851	37,750	179
연도	구분	총계	센터주관	소방서주관	본부주관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안전협회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과제평가
22년	횟수(회)	45,460	14,372	2,589	352	335	12	607	641	26,552	0
	인원(명)	321,031	229,050	49,190	3,466	1,472	74	1,851	9,376	26,552	0

참고 2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8]
- 재해보상 취지:
 -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입는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해 치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대원의 생명·신체 보호와 활동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함.
 -
- 재해보상 주체: 시·도지사
- 재해보상 재원 : 시·도 일반회계
- 재해보상 요건: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
- 재해보상 절차:
 - 대원 부상발생 → 의용소방대 대장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해보상 신청 → 재해보상 확정 → 재해보상금 지급
 - ※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재해보상 절차가 일부 다름
- 재해보상 현황(최근 5년간)

단위: 명, 천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10	309,059	14	17,760	21	35,858	10	37,383	24	27,611
요양보상	8	20,009	13	16,231	21	35,858	10	37,383	24	27,611
장애보상			1	1,529						
장제보상	1	7,050								
유족보상	1	282,000								

○ 재해보상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

종류	재해보상 요건 및 내역	보상금 지급기준																		
요양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 등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애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름	<table><tr><td>제1급</td><td>유족보상금의 100/100</td></tr><tr><td>제2급</td><td>유족보상금의 88/100</td></tr><tr><td>제3급</td><td>유족보상금의 76/100</td></tr><tr><td>제4급</td><td>유족보상금의 64/100</td></tr><tr><td>제5급</td><td>유족보상금의 52/100</td></tr><tr><td>제6급</td><td>유족보상금의 40/100</td></tr><tr><td>제7급</td><td>유족보상금의 20/100</td></tr><tr><td>제8급</td><td>유족보상금의 10/100</td></tr><tr><td>제9급</td><td>유족보상금의 5/100</td></tr></table>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장례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 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되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유족의 범위: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소방사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참고 3

해양재난구조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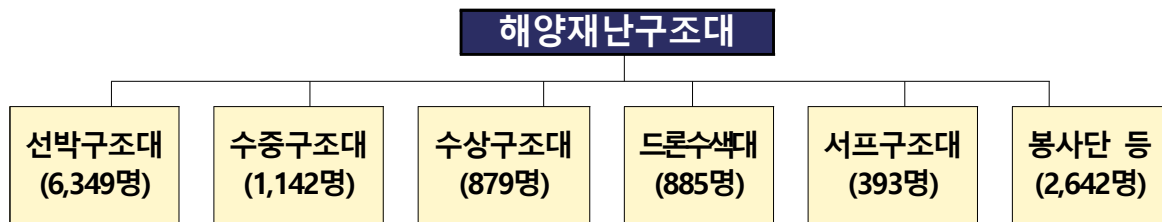
(자료: 해양경찰청)

□ 해양재난구조대 개요

- 설립 근거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1.3시행)
- 조직 구성 : 전국 해양경찰서(21개서)에 22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 ※ 평택해양경찰서는 2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경기남부, 충남북부)
- 대원·선박 현황 : 12,290명 / 선박 6,556척 ('25. 12. 31.)

• 최근 5년 대원·선박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등록대원	7,491명	9,792명	10,592명	10,710명	11,312명	12,290명
보유선박	5,157척	5,612척	5,986척	6,010척	6,246척	6,556척



- 성 별 남자 10,558명(86%), 여자 1,732명(14%)
- 분야별 선박구조대 6,349명(52%), 비선박구조대 5,941명(48%)
- 지역별 중부청 2,539명(21%), 서해청 3,779명(31%), 남해청 2,305명(19%), 동해청 2,392명(19%), 제주청 1,275명(10%)

□ 해양재난구조대(민간구조세력) 연혁

- '97년 경남 통영에서 해양구조에 뜻이 있는 어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율구조대' 출범
- '04년 전국 소규모 해양구조세력을 민간자율구조대로 통합하여 전국 확대 운영
- '12년 「수난구조법(現 수상구조법)」 개정, '민간해양구조대원' 명칭 법령상 정식 명문화
- '13.1월 「수난구조법」 의거,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 및 홍보, 교육·훈련, 행정기관 위탁업무 등 수행하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 '15.7월 수상구조법 개정, 지자체의 수난구조활동 지원 근거 마련(75개 지자체 조례 제정)
- '22~'23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의원(윤재갑, 이달곤 위원/21대국회) 입법을 통해 제정('24.1.2.) / 시행('25.1.3.)

□ 구조세력별 선박사고 구조 현황(출처: 해상조난사고 통계관리시스템)

[단위 : 척(구조율)]

구분	사고 총계	국가기관		민간 구조세력					기타
		해양 경찰	군· 관공선	소계	해양재난 구조대	어선	레저·예인 화물선 등	자력	
'25년	4,642	2,702 (58.2%)	32 (0.7%)	1,777 (38.3%)	240 (5.2%)	627 (13.5%)	243 (5.2%)	667 (14.4%)	131 (2.8%)
5년평균 (‘20~‘24년)	3,944	2,182 (55.3%)	60 (1.5%)	1,584 (40.2%)	250 (6.4%)	518 (13.1%)	202 (5.1%)	613 (15.6%)	118 (3.0%)
'24년	4,213	2,326 (55.2%)	56 (1.3%)	1,716 (40.7%)	259 (6.1%)	654 (15.5%)	177 (4.2%)	626 (14.9%)	115 (2.7%)
'23년	4,068	2,534 (62.3%)	28 (0.7%)	1,356 (33.3%)	199 (4.9%)	526 (12.9%)	123 (3.0%)	508 (12.5%)	150 (3.7%)
'22년	3,779	2,228 (59.0%)	67 (1.8%)	1,363 (36.1%)	205 (5.4%)	309 (8.2%)	266 (7.0%)	583 (15.4%)	121 (3.2%)
'21년	3,882	2,192 (56.5%)	74 (1.9%)	1,491 (38.4%)	258 (6.6%)	394 (10.1%)	277 (7.1%)	562 (14.5%)	125 (3.2%)
'20년	3,778	1,630 (43.1%)	76 (2.0%)	1,992 (52.7%)	331 (8.8%)	709 (18.8%)	167 (4.4%)	785 (20.8%)	80 (2.1%)

□ 구조세력별 선박사고 구조 현황(출처: 해상조난사고 통계관리시스템)

[단위 : 척(구조율)]

구분	사고 총계	국가기관		민간 구조세력					기타
		해양 경찰	군· 관공선	소계	해양재난 구조대	어선	레저·예인 화물선 등	자력	
5년평균 (‘20~‘25년)	4,115	2,396 (58.2%)	51 (1.2%)	1,540 (37.4%)	232 (5.6%)	502 (12.2%)	217 (5.3%)	589 (14.3%)	128 (3.1%)
'25년	4,642	2,702 (58.2%)	32 (0.7%)	1,777 (38.3%)	240 (5.2%)	627 (13.5%)	243 (5.2%)	667 (14.4%)	131 (2.8%)
'24년	4,213	2,326 (55.2%)	56 (1.3%)	1,716 (40.7%)	259 (6.1%)	654 (15.5%)	177 (4.2%)	626 (14.9%)	115 (2.7%)
'23년	4,068	2,534 (62.3%)	28 (0.7%)	1,356 (33.3%)	199 (4.9%)	526 (12.9%)	123 (3.0%)	508 (12.5%)	150 (3.7%)
'22년	3,779	2,228 (59.0%)	67 (1.8%)	1,363 (36.1%)	205 (5.4%)	309 (8.2%)	266 (7.0%)	583 (15.4%)	121 (3.2%)
'21년	3,882	2,192 (56.5%)	74 (1.9%)	1,491 (38.4%)	258 (6.6%)	394 (10.1%)	277 (7.1%)	562 (14.5%)	125 (3.2%)

□ 인적·물적 피해 보상현황

※ 총 물적피해 발생 11건 중 손실보상(경직법) 5건, 보험처리 1건, 미보상 5건

구분	인적 피해				물적 피해			
	피해현황		보상현황		피해현황		보상현황	
	건수	내용	보상내역	보상액	건수	내용	보상내역	보상액
총계	5	-	의사상자 3 보험처리 1 조례 1	1.3억원	11	-	경직법 5 보험처리 1 미보상 5	7,500만원
'24년	1	손가락 부상 (전치 6주)	의사상자 1 (9급)	1,100만원	1	선체 파손	경직법 1	8만원 (수협보험 72만원)
'23년	-		-	-	2	선체 파손 선체 파손	경직법 2	270만원 520만원
'22년	2	허리·발목 부상	의사상자 1 (9급)	1,100만원	4	드론 추락 추진기 손상	미보상 2	자체수리
			조례 1	30만원		차량 침수	경직법 1	5,300만원
						해경함정 파손	단체보험 1	1,000만원
'21년	2	안면 열상 및 출혈	단체보험 1	50만원	4	핸드폰 분실 선체 파손	미보상 3	자체수리
		우안실명	의사상자 1 (7급)	1.1억원		드론 추락		
						선체 파손	경직법 1	360만원
'20년	-	-	-	-	-	-	-	-